

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예비비지출승인안

검 토 보 고 서

1998. 10. 13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

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

1998.10.13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9월 1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-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지출건수 : 2건
- 지출결정액 : 87백만원, 지출액 : 87백만원
- 지출사유
 - 옥천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학생사망사고 손해배상합의배상금 67백만원 (97. 9.13 지출결정)
 - 충주교현초등학교 학생성폭행사건 손해배상합의배상금 20백만원 (97.12.13 지출결정)

5. 검토의견

- 옥천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학생사망사고 손해배상합의 배상금과 충주교현초등학교 학생성폭행사건 손해배상합의 배상금은
- 법원의 배상판결과 합의에 따라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